

직업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테러현장 촬영을 부탁, 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직업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Ministère public c/ Petigas et autres
파리지방법원 17부(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1997. 11. 4. 판결

사실관계

프랑스의 일간지 프랑수아(France Soir)지는 1995년 10월 19일자 신문에서, 10월 17일 도시전철(RER) 뒤편 도로세(Musée d'Orsay)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철역 승강장에서 부상자를 간호하는 의료진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였다. 프랑수아지에 의하면, 이들 사진은 시그마(Sigma)통신이 배포한 것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분 후에 구조인력이 촬영한 최초의 사진"이 라는 것이다.

파리경찰청장의 사건 발표 직후, 1995년 10월 24일에 공화국검찰관은 문제가 된 사진원본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명하였다.

파리구조대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프랑수아지에 "공포의 심장부에서"라는 제하에 보도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적어도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부상자를 간호하던 네케르(Necker)병원의 긴급구조대원인 알랭 페티가(Alain Petigas)씨로 밝혀졌다. 알랭 페티가 씨는 구조대 소속 사진사에게 자신이 소지한 콤팩트형 사진기의 플래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파리경찰청의 기술 담당부서에서 촬영한 비디오필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여러 장의 사진에서 그 모습이 자주 보인다.

수사결과, 네케르병원의 긴급의료진이 폭탄테러 현장에 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긴급의료단장인 칼리(Carli) 박사는 구조대원 중 직접 부상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구조대원이 긴급구조대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한정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알랭 페티가 씨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매우 정상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 사진을 배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전적인 허가도 없었다고 칼리 박사는 증언하고 있다. 칼리 박사는 이 사건 수사관에게 1996년 4월에 출간된 '생명구조와 의료진'이라는 책을 제출한바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시그마 통신사의 사진기자이자 전직 긴급구조대원인 크리스티앙 무세(Christian Mouchet) 씨가 공개한 사진 중의 하나가 게재되었는데, 이 사진은 폭탄테러 수주일전에 긴급구조에 관한 상황설명을 하면서 게재한 것이다.

최초 진술에서 알랭 페티가 씨는 자신이 폭탄테러 현장에서 긴급구조팀을 조직하였으며 구조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칼리 박사의 허락하에 서너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것은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손수레와 지하철 승강장에 비치된 물건 그리고 긴급구조대원들이 일하는 장면들을 찍은 것이다. 이들 사진을 촬영한 후에 알랭 페티가 씨는 사진기를 긴급구조대에서 사진현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넘겼으며, 그 이후 그는 촬영한 사진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크리스티앙 무세 씨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뮤제 모르세 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차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파리 긴급구조단 복장을 착용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수아지에 실린 모든 사진은 자신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크리스티앙 무세 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수사결과 "공포의 심장부에서" 제하에 실린 사진의 촬영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는 긴급구조단의 사진촬영 담당자가 촬영한 비디오 필름에 전혀 등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구조를 받는 마지막 부상자를 촬영한 사진은 구조대 개입의 마지막 상황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세 씨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현장도착 후 10여 분만에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마침내 페티가 씨는 진술하기를, 크리스티앙 무세 씨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을 촬영하게 하기 위하여 무세 씨의 사진기를 페티가 씨에게 넘겨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때 페티가 씨는 무세 씨를 옛 동료로서 긴급구조반의 사진촬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폭탄테러가 일어난 당일에 페티가 씨는 안전요원들에 의하여 뒤로 물러날 것을 요구받은 무세 씨를 만났으며, 이 때 무세 씨의 요청에 따라 여러 장의 사진촬영을 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페티가 씨는 무세 씨에게 사진필름을 넘겨주었지만 그가 이 사진들을 배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고 단지 이 사진들을 긴급 구조반 내부에 사용할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앙 무세 씨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긴급구조대원이 자신의 사진기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특히 들 것에 옮겨 지는 부상자, 칼리 교수, 한두 장의 기관차, 여러 장의 긴급행랑, 간호를 받고 있는 마지막 부상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프랑수아지에 게재된 부상자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문결과 페티가 씨는 자신의 마지막 진술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즉 자신은 크리스티앙 무세 씨를 만나기 전에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교육의 목적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따르면, 사진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의료진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이유

형법 제 226-3 조는 "직업상이나 신분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한 자는 비밀정보누설죄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와 구술심리를 통하여 보건대 알랭 페티가 씨의 직업상 비밀침해죄가 인정된다. 긴급구조대원이며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 의거하여 직업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1973년 4월 20일자 훈령에서 보다 명백하게 천명되고 있는 바, 모든 의료보조원들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은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파리긴급구조대장인 칼리 박사에 의하면 모든 필름이나

사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용도가 긴급구조대 내부에 사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적인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랭 페티가 씨는 직업상 취득한 사진원판을 크리스티앙 무세 씨에게 직접 건네 주었다. 따라서 알랭 페티가 씨는 비밀을 견지하여야 할 성격의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진원판은 교육연구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즉 필름현상은 의료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알랭 페티가 씨는 기자에게 필름을 통채로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진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들 사진이 무세 씨가 작성한 기사에 인용되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으며, 더구나 이들 사진이 긴급구조대에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밀리에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동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자신은 이들 사진의 언론 배포를 몰랐기 때문에 직업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크리스티앙 무세 씨가 사진촬영을 위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무세 씨를 위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그의 사진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둘째, 사고가 난 당일 긴급구조단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던 기자가 그를 대신해서 긴급구조대원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알랭 페티가 씨는 크리스티앙 무세 씨에게 문제의 사진촬영장면을 담은 필름을 넘겨 주었다. 따라서 알랭 페티가 씨의 직업상 비밀의 침해사실은 인정된다.

크리스티앙 무세 씨는 그가 폭탄테러 현장에서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알랭 페티가 씨에게 사진기를 넘겨 주면서 촬영을 부탁하여 그 사진원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세 씨는 이들 사진 중 일부를 시그마통신사에 배포목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 이에 무세 씨는 알랭 페티가 씨가 범한 직업상 비밀누설죄의 공범 및 그와 관련된 사진은닉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 형

알랭 페티가 씨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의 직업에 비추어 보건대 절대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직업상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중대한 점이 인정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의료진에게 부과된 모든 환자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탄테러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황하에서 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랭 페티가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적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한 바 있고 또한 그의 앞으로의 직업상의 장래를 고려하건대 법원은 이러한 형벌을 범죄기록부 제 2 호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 크리스티앙 무세 씨는 그가 일찍이 긴급구조대원으로서 일하면서 허가 받았던 지위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동시에 알랭 페티가 씨로 하여금 직업상 비밀을 위배하면서까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원판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바 있고, 나아가서 그는 기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채 이들 참혹한 현장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집단적 불안감과 공포심리를 가중시킨 점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 크리스티앙 무세 씨가 저지른 특별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8 월에 벌금 8 만 프랑(약 1,600 만원)을 명한다.

판결해설

1995 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파리 지하철역에서 여러 차례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언론의 사진게재에 대한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 혹은 정보의 권리라는 기본원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내지 정보의 권리의 행사가 지나칠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881 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3 항에서는 특정한 범죄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상황을 전재할 목적으로 사진 · 데생 · 판화 · 인물사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형사 소추하게 되었고 이 사건담당 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인간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 조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초상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기사나 초상을 통하여 국민의 정보를 충족시키는 언론인의 권리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제 3 의 방법, 즉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의 보도로 인하여 직업상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여전히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직업상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사진기자는 이 사건에서 경찰에 의하여 폭탄테러 현장에서 추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진기자로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폭탄테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사진기를 긴급구조대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점에 관하여 법원은 사진기자를 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공범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서 법원은 사진기자가 긴급구조대원이 촬영한 필름을 수수하는 것을 범죄은닉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긴급구조대원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즉 긴급구조대원은 우연히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직업상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법원은 의료진이나 긴급구조대원의 직업상 비밀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이들의 직업상 비밀의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의료진이나 긴급구조대원이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이를 직업상 비밀 위배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지 폭탄테러 현장에서 긴급구조물품을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응급처치요원이나 간호원과 같은 의료진과 동일하게 직업상 비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긴급구조대원이 자신이 하여야 할 본분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를 직업상 과오에 해한 책임이나 징계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게 직업상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무세 씨가 알랭 씨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진원판을 넘겨 주도록 한 것을 은닉죄로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본분을 어긴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사진을 보도한 것을 두고서 과연 기자의 본분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사진보도로 인하여 폭탄테러 현장의 공포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정도는 바로 기자의 본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련되는 전체 혹은 일부의 전제는 바로 직업의 비밀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사이에서 문제될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질서에 따라 조화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바로 요구되는 것이 직업인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보호대상은 바로 인명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행위에 대한 어떠한 장해도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중이 참여하는 구조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구조현장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구경삼아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당연히 제지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정당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이들 하찮은 행위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집단적 공포심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교란시키려는데 이 사진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루머를 통하여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진기자의 출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구조활동 자체에 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부상자에 대한 사진촬영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에 대한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과 같은 구조대가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언론기자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언론인 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업상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정보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법치국가에서 관계법률 상호간에 규정상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반되는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법원은 적절하게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8 년 제 1 호(1998, no 148),pp. 14-18.